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17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이헌승·박덕흠·김상훈

김 건・주호영・김선교

서지영 · 김도읍 · 박성훈

윤상현 • 유용원 • 서일준

이상휘 • 박준태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未備)하여 거래소마다 손해배상의 정도에 차이가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이용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 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 고
 - 2.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

써 발생한 사고

-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 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 전산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 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8조 중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를 "전산사

고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 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 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한다)로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이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제2조제2호 각목의 행위에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가상자산의매매,교환,이전또는보관・관리등의처리를지시하는 것을 말한다)등에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 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 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 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 로써 발생한 사고
-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 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u>가.</u>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 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 파 등의 방법
 -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 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 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

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 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 전산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 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 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 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가상자산사업 자가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 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 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 제8조(보험의 가입 등) ------

사업자는 <u>해킹·전산장애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u>전산사고에</u>

제8조의2(접근매체의 분실과 도 난 책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법령을 우선 적용한다.